

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5.

발 의 자 : 이해식 · 박정현 · 채현일
양부남 · 윤준병 · 이상식
김승원 · 김한규 · 서영교
한민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,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부칙을 통해 「경범죄 처벌법」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,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관계 법률에 반영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부칙 제7조).

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, 제4항부터 제8항까지,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4호 중 “경찰공무원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, 경찰공무원”으로 한다.

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9호 중 “총경(자치총경을 포함한다)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, 총경(자치총경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④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”를 “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”으로, “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”을

“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⑤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2조 중 “교도소·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”을 “교도소·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”으로, “교도소·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”을 “교도소·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311조제4항 중 “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·교도소”를 “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·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”로 한다.

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2항 중 “경찰공무원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·경찰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찰서유치장,”을 “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”로 한다.

⑦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제1항 중 “경찰청장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장, 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⑧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 중 “경찰청장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장, 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단서 중 “군인·검사 또는 경찰관”을 “군인·검사·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관”으로 한다.

⑪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5항 중 “검찰총장”을 각각 “검찰총장, 중대범죄수사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(시행일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(시행일) ① <u>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3조제1항제34호 중 “경찰공무원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, 경찰공무원”으로 한다.</u> ② <u>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2조제9호 중 “총경(자치총경을 포함한다)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, 총경(자치총경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</u> ③ (현행 제1항과 같음) ④ <u>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8조제5항 중 “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”를 “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”으로, “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”을 “교정시설의 장</u>

<신 설>

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⑤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2조 중 “교도소·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”을 “교도소·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”으로, “교도소·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”을 “교도소·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311조제4항 중 “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·교도소”를 “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·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”로 한다.

<신 설>

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2항 중 “경찰공무원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·경찰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찰서유치장,”을 “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”로 한다.

<신 설>

⑦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

<u><신 설></u>	<u>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13조의3제1항 중 “경찰청장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장, 경찰청장”으로 한다.</u> <u>⑧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6조의2제1항 중 “경찰청장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장, 경찰청장”으로 한다.</u>
<u>② (생 략)</u> <u><신 설></u>	<u>⑨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 <u>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22조제1항 단서 중 “군인·검사 또는 경찰관”을 “군인·검사·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또는 경찰관”으로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⑪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 <u>제8조제1항 및 제5항 중 “검찰총장”을 각각 “검찰총장, 중대범죄수사청장”으로 한다.</u>